

제 1463 호
1969. 12. 26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고 건수
편집인: 공보관 유 천 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예 규	
제 519 호 서울특별시의사경찰관인사관리요령	3
● 고 시	
제 540 호 배합사표성분등록	7
제 543 호 서울특별시한강공원관리사업소위치변경고시	7
● 공 고	
제1021호 관인패기광고	8
제1022호 관인재교부광고	8
제1030호 K·S표시정지처분광고	8

(이면계속)

일																				
탄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구 고 시

제 2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8
제 26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9
제 4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9
제 4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0
제 4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0
제 43 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0
제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1
제50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11

◎ 구 공 고

제 1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2
제 91 호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공고	12
제130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공람공고	13
제433호 관인신조(개각)사용공고	13
제438호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공람공고	15

◎ 사 령

예 규

1. 제정사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수한 외
사요원을 확보하고 의사경찰 관리를 효율
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적용범위 : 경사이하 경찰관(제2조)
- 의사경찰관의 자격 : 서울특별시경찰관의
국어기능검정요강 또는 경찰관의국어기
능검정요강에 의한 합격자(제3조)
- 심사위원회 구성 : 경찰국장이 지정하는
5인이내(제4조)
- 의사경찰관 임용 : 자격증소지자 내외
(제8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예규제519호

서울특별시외사경찰관인사관리요령

서울특별시외사경찰관인사관리요령을 다
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외사경찰관(이하
“외사경찰”이라 한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외사경찰에 대한 자격요건과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서울특별시경
찰국(이하 “경찰국”이라 한다), 산하경찰
서 및 김포국제공항경찰대의 국제선등에
서 의사직무를 수행하는 경사이하의 외사
경찰에게 적용한다.

제3조(외사경찰의 자격기준) 외사경찰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가진자가 우선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국제 감각이 있는 자
2. 서울특별시경찰관의국어기능검정요강
또는 경찰관의국어기능검정요강에 의한
합격자, 다만 위 요강에서 정하지 아니
한 검정대상 이외의 외국어에 대하여는
특별히 당해 외국어 실력이 인정되는 자
3.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외국어 실력이 인정되는 자

제4조(외사경찰자격 심사위원회 구성등) ①우
수한 외사경찰을 확보하고 외사경찰의 적
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찰국에 외사
경찰자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찰
국내의 총경중에서, 4원은 경정중에서
서울특별시경찰국장(이하 “국장”이라 한
다)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회의 인부) 위원회는 경찰국 및
산하경찰서 등의 소속 공무원중 외사경찰
희망자에 대하여 제3조에 규정된 자격을
심사하고 외사경찰자격을 부여 하는것을
임무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회를 대표하되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는 외사경
찰자격 심사를 년 1회 이상으로 실시한다.
②위원회는 외사경찰 적격자를 심사하여 선
발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격을 인정하는 별
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외사경찰 자격증(이
하 “자격증”이라 한다)교부하여야 한다.

③외사경찰 자격 심사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외사경찰 자격 심사서를 작
성 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의한 자격증 교부시는 별지 제3
호 서식에 의거 외사경찰자격증 발급대장에

<p>기재한후 산하 경찰서에 시달하여야 한다.</p> <p>⑤위원회는 제3조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자격이 불명확 할때에는 당해 외국어 능력 평가불 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p> <p>⑥위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시명을 둔다. 간시는 의사업무 주무계장으로 한다.</p> <p>제8조(의사경찰임용) ①산하경찰서장은 의사경찰 임용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경찰 자격증(이하 "자격증 소지자"라 한다)을 부여 받은자 중에서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단 특수공작, 수사요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②의사경찰 임용시 각 경찰서 및 공항경찰대 소속직원중 자격증 소지자가 없을때에는 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국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p> <p>③의사경찰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우선하여 충원요구 할 수 있다.</p> <p>제9조(보직관리) 의사경찰 자격증 소지자</p>	<p>를 타부서에 전보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절차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와 관련된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자 2. 의모가 단정하지 못한자 3.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소양이 심히 부족한자 <p>제10조(운영세칙) 이 요령 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요령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요령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경찰관의국어기능점정요강 또는 경찰관의국어기능점정요강에 의한 합격자로서 의사기능에 근무하는 자는 이 요령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p>
---	---

(별지 제1호서식)

의 사 경 찰 자 격 증

연 번 89-1

소 속

계 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을 의사경찰 인사관리요령 제7조에 의거 자격을 인정하고 자격증을 수여함.

19

서울특별시경찰국장

(별지 제2호서식)

외사경찰자격심사서

원소속

계급

성명

국 가 관	
과 립	
경찰능력	
외국어능력	
경찰교육	
건강상태 (용모포함)	
상벌관계	
심 사 종합 의견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별지 제3호서식)

의사경찰 자진응발급대상

연도별	입력번호	계급	성명	생년월일	의무어록기	비고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540호

배합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의 의하여
배합사료성분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89. 12. 21

서울특별시장

사료성분등록내역

제조업체	소재지	대표자	등록 번호	사료 종류	사료 명칭	사료 용도	사료성분량					
							조 단백질 (이상)	조 지방 (이상)	칼슘 (이상)	인 (이상)	조 성유 (이하)	조 피분 (이하)
(주)미원 배합사료 장	서울 영 등포구 대림동 629-6	김재방	나01 -01	퇴지 배합 사료	육성 돈5호	2-4 개월	15.0	2.0	0.5	0.4	6.0	9.0
			나01 -02	-	비육돈 후기 2호	4개월 출하 시	14.0	2.0	0.5	0.4	7.0	9.0
			나01 -03	고기 소배합 사료	큰소 비육 2-2호	비육 달기용	11.0	2.0	0.5	0.3	15.0	11.0
건국사료 (주)	서울 성 동자 양동 227-315	전년규	나01 -04	젓소 배합 사료	착유 우유 특수 사료1	조사료 일부 체용	10.9	1.5	0.3	0.2	35.0	15.0
			나01 -05	-	착유 우유 특수 사료2	고능력 우유 영양소 보강	10.0	1.0	0.1	0.3	10.0	50.0

◎서울특별시고시제543호

서울특별시환경공원관리사업소 위치변경고시

서울특별시환경공원관리사업소 설치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환경공원은
다사업소의 위치를 변경 고시합니다.

1989. 12. 22

서울특별시장

- 아 래 -

현 위 치	변 경 위 치	변경 연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3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	'89. 12. 22
삼창플라자 빌딩 5층	번지의 78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공 고</div> <p>●서울특별시공고제1021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폐 기 공 고</p> <p>서울특별시 조례 제2515호('89. 11. 3)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 사업소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함을 통 규정 제9조 및 동 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폐기승인일자 : 1989. 12. 20 2. 폐기관인(직인,계인)내역</p>		<p>2. 관인 재교부 내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신 규</td> <td style="width: 25%; text-align: center;">폐 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인 영</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공인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장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북부위생처리장장인</td> </tr> </table>			신 규	폐 기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장인	북부위생처리장장인
	신 규	폐 기										
인 영												
공인명	서울특별시위생처리장장인	북부위생처리장장인										
<p style="text-align: center;">인 영</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div> <p>공인명 서울특별시 목동지구개발사업소장의 인</p>		<p>●서울특별시공고제1030호</p> <p style="text-align: center;">K.S 표시정지처분공고</p> <p>공업표준화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표시정지 처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3</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 체 명 : 전일벨트공업사 2. 대표이사 : 박춘용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1동 552-5 4. 규격번호 : KSB 6405 5. 규 격 명 : 난방용 방열기 부속품 6. 종류·등급 : 온수용 방열기 벨브 7. 표시정지처분기간 : 공고일부터 3월 8. 처분사유 : K.S규격 미달 										
<p>●서울특별시공고제1022호</p> <p style="text-align: center;">관 인 재 교 부 공 고</p> <p>서울특별시 조례 제2517호('89. 11. 3)의 개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위생처리장장"의 관인을 관인규정 제2조, 제4조 및 제8조와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함을 통 규정 제9조 및 동 규칙 제8조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9. 12. 20</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장</p> <p>1. 사용 및 폐기승인일자 : 1989. 12. 20</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구 고 시</div> <p>●성북구고시제25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북구 공고 제10호('89. 12. 5-'89. 12. 18)로 공람공고 한바있는 정릉동 236일대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19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정릉동 254-76~236-940칸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정릉동 236일대 도로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 6m, 연장=340m

라. 사업시행자 : 성 북 구 청 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1-'9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아.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생략
따로붙임 : 토지 및 물건조서

강서구고시제26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89. 12. 20

강 서 구 청 장

다 음 -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 체신부 5차주택조합, 동촌동 지역주택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촌동 630번지 8호의 1필지

나. 면적 : 3,901.40㎡

다. 규모 : 아파트 12층 1동 84세대

4. 사업시행 기간 : '89. 12-'90. 12

구로구고시제40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제116호('89.11.27)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고 이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442-95~513-5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도로 및 하수도) 구로구청-경인로간 도로개설공사(3차)

3. 사업의 규모 : 도로포장 B=35m, L=100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강(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토지 및 건물 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41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112호('89.11.23)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구로구청장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70-66번지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개봉동 70-66간 도로개설 공사
-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6m, L=100m 하수도 D=450%, L=100m
-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89.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42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제112호('89.11.23)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에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구로구청장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95-116번지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구로동 95-116간 도로개설 공사
-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8m, L=127m 하수도 [D=450%, L=70m D=800%, L=87.5m
- 4. 사업 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89. 12. 31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 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43호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제115호('89.11.27)로 공람공고한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60-6~67-9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도로및하수도) 남부순환도로-경인로간 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도로포장 B=20m, L=230m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구로구청장)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89.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7.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1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 및 건물조서

● 구로구고시제124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제514호('89.11.29)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얏기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9. 12. 18

구로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정	대로	3	86	25	6,950	(광16호) 양 화 동	안양교시계	고척동60-631간 폭원확장L=700m
변경	대로	3	86	25-33	56,950	(광16호) 양 화 동	안양교시계	

나. 별첨 도면 표시와 같음(도면생략)

● 서초구고시제50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89. 12. 21

서 초 구 청 장

1. 사업 명: 민영주택건설 사업
2. 사업 자: [대용제약제2직장주택조합
우성건설(주)직장주택조합의
26개 조합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서초구 양재동 154-2의 31필지
나. 대지면적: 41,090㎡ (12,429.72평)
[대용: 2,834㎡(857.28평)
우성: 38,256㎡(11,572.44평)
다. 건축면적: 6,791.51㎡(2,054.43평)
[대용: 623.12㎡(188.49평)
우성: 6,168.39㎡(1,865.94평)

라. 건축면적: 85,841.625㎡(25,967.09평)
 [대용: 5,983.915㎡(1,810.13평)
 우성: 79,867. 71㎡(24,156.96평)
 마. 건설규모: 아파트 지하1층 지상7-15층
 11동 844세대
 [대용: 지하1층 지상7-10층 1동 50세대
 우성: 지하1층 지상12-15층 10동 794세대
 바. 사업시행기간: '89. 7-'90. 12

구 공 고

◎성북구공고제11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고시제10호('69. 2. 28)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고시되고 서울시 고시 제 486호('85. 7. 22)호로 변경고시된 북악산길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요저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2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기록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성북구청(기록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89. 12.

성 북 구 청 장

- 1) 사업시행처: 돈암동 19-345~안암동 산1-43간
- 2) 사업종류 및 명칭: 북악산길 연결도로 개설공사
- 3) 사업의규모: 도로확장 B=6-10m→ B=7-16m, L=580m
- 4)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90. 1-'91. 12.31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별첨
- 8) 기타사항: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공고제91호
















주택자재생산업등록취소공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1조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아래 주택자재생산업소에 대하여 등록취소 하였고 공고 합니다.

1989. 12

동 대 문 구 청 장

등록번호	품 목 상 호	대 표 자	주 소	등록취소일자	등록취소사유
5-2	시멘트벽돌 형제기업	한 용 성	답십리동 산 2-9	'89. 12. 19	자진폐업

폐 기			
인			
영			
공인명	수유 제2동장의 인	수유 제3동장의 인	도봉 제2동자의 인
민원사무용 신 규			
인			
영			
공인명	미아제3동장의인 및 개인 민원사무전용		미아제6동 개인 민원사무 전용
인			
영			
공인명	방학제2동장의인 및 개인 민원사무전용		도봉제2동장의인 및 개인 민원사무전용
폐 기			
인			
영			
공인명	미아제3동장의인 및 개인 민원사무전용		미아제6동 개인 민원사무 전용
인			
영			
공인명	방학제2동장의인 및 개인민원사무전용		도봉제2동의 인 및 개인 민원사무전용

◎1989년 12월 22일자				고용직공무원 징계처분		령제474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최태성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파면에 처함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수원지)	지방수도보조원				
신동근	불문경고(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서울대공원관리 사업소	지방감시원				
◎1989년 12월 22일자				기능직 공무원 경고		령제47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박태성	불문경고(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의결 사항)	한강공원관리(사) 중앙하수처리장	지방전기장 (기능직7등급)				
오인득	" (")	"	지방기계원 (기능직8등급)				
서울특별시							
◎1989년 12월 13일자				6급기술직 지방공무원 인사발령		령제1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	급			
김세열	총무부 인사관리과 대기근무를 명함.	기술심사담당관	지방기계기사				
◎1989년 12월 20일자				인사발령 훈지		령제19호	
성명	발령사항	성명	발령사항				
김명구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중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서승완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강남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정진호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영등포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조현의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동부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유봉희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보광동수원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손재우	지방기계기원보 시보에 임함. 구의수도사업소 근무를 명함.				

